

대학발전기금 유치 공로자 예우 시행세칙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4. 7. 29.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대학발전기금 유치 공로자 예우 시행세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대학발전기금 조성 운영규정 제6조 2항에 따라 발전기금 유치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대상) ① 발전기금 중 학교에 용도를 위임한 일반 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데 공헌한 자
② 유치금액 기준 단일 건 5백만원 이상의 현금을 유치한 자
③ 교직원에 한하되, 발전기금 모금을 주업무로 하는 교직원은 제외

제3조 (예우 내용) ① 발전기금 입금액의 최대 5%의 모금 인센티브를 교비로 지급한다.
② 경우에 따라 모금 인센티브를 감사패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4조 (지급 시기) 모금 인센티브는 해당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 3월 1일 이후 연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시 제5조의 지급 절차에 따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.
<개정 2024.7.29.>

제5조 (지급 절차) ① 발전기금 유치 공로자는 기부자가 기부약정서에 자필로 '기부 추천인'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.
② 1항의 발전기금 유치 공로자에 대한 모금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.
③ 발전기금 유치 공로자는 대학발전위원회 심의 이전에 별지 제1호의 발전기금 유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회계 마감일까지 발전기금 모금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 (부정행위 금지) 발전기금의 유치 및 모금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, 담합 등 부정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해당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즉시 모든 모금 인센티브 지급을 무효화한다.

제7조 (기타사항)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발전위원회 결의에 따른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.
-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지 1>

발전기금 유치 결과 보고서

1. 인적사항

- 성명 :
- 소속 :
- 직위 :

2. 기부자와의 관계 :

3. 발전기금 유치금액/입금액

연번	기부자 성명(법인명)	기부자 소속	유치금액	입금액
1				
2				
3				
합계 금액				

4. 발전기금 유치 과정

연번	날짜	내용	결과
1			
2			
3			
4			
5			

※ 상기 표에 작성하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.

5. 기부자 약정서 사본 각 1부 첨부

상기 본인은 발전기금 유치 과정에 있어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서약하며
시행세칙 제2조에 따른 모금 인센티브 지급 대상임을 보고 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